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World Class 기업”이란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을 말한다.
3. “World Class 300 기업”이란 이 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기업규모, 혁신·성장성 등의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확정된 후 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World Class 300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성장전략서”란 World Class 300 기업 또는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World Class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한 사업 전략서를 말한다.

제2장 프로젝트의 운영체계

제3조(정책협의회) ①중소기업청장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World Class 300 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책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로 한다. 단, 전담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관 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
2.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프로젝트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중간평가, 지정의 취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정책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정책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World Class 300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실무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율하며 제6항에 의해 설치되는 분과협의회를 지휘·감독한다.

⑤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은 기업 지원분야인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업협회) World Class 300 기업은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평가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
3.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5.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
6. 프로젝트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
7.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그 밖에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 ①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지정취소 및 졸업 등의 업무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여, 신청하거나 추천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기본 자격으로 하고,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③전담기관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활용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8조(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신청절차 등)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장전략서
2. 최근 5년 동안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10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신청기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제8조 2호에 따른 신청자격, 제9조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전략서 및 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장전략서상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사항
2. 성장전략서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World Class 300 기업을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1조(후보기업육성) ① 중소기업청장은 World Class 300 신청요건기업의 확대를 위해 후보기업육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후보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다.

제12조(기업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에 의해 선정된 World Class 300 기업에게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때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정 효력은 지정된 해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World Class 300 기업은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의 통계자료 작성 등 실적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적보고) ①World Class 300 기업은 매년 1분기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의 실적보고서,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World Class 300 기업이 제출하는 성장전략서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프로젝트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을 분석한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성장전략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World Class 300 기업은 최초 선정 이후 격년 마다 평가대상이 되며, 전담기관의 장은 성장전략서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심의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이 제14조의 중간평가 결과 “미흡” 기업으로 연속하여 판정된 경우
 2.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2년간 연속해서 World Class 300 선정요건인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3년 평균 R&D투자비율 중 어느 한 쪽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5. World Class 300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7. World Class 300 기업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8. 그 밖에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 및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되는 등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정취소 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졸업 및 포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지정 후 제18조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연도 종료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제12조제1항에 의한 지정 효력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② 중소기업청장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자에 대해 포상 또는 World Class 300 명예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프로젝트의 성과활용) ① World Class 300 기업은 지정기간 종료 후 5년간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성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성과활용 보고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프로젝트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사업

제18조(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해 World Class 300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분야
2. 기업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지원분야
3.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분야
4. 기업의 우수 인적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분야
5. 기업의 디자인 정보조사·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분야
6.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분야
7.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분야
8. 그 외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분야

제19조(기술개발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World Class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정부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술개발 내용의 중요성, 기대효과,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특허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 한다.

1. 기술개발과제 선정 전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연구개발 결과와 표준화를 연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사
2.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에는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
3. 기타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④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이라 한다)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개발 규정에 준하여 지원 및 처리한다. 이 때, 기술개발 지원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사업비 요령’ 제5조제7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비 요령’ 제8항제1호의 ‘중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본다.

제5장 기 타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제10조에 따른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제14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1년 이후에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